

September 1,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0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8. 24. ~ 8. 28.)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기재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2020. 8. 27.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의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의 경우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 지원, ② 항공여객운송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③ 리스료 절감 등을 위한 공적보증, 항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등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등 항공업계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정부 코로나19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참고자료]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8. 25. 「상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 주요 내용으로 ①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③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고자료] 상법 일부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8. 25.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 주요 내용으로 ①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②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③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④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고자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8. 25.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 주요 내용으로 ①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②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수립, ③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점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고자료]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금융위·금감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020. 8. 2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 기한 연장('20. 9월 말→'21. 3월 말), ②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 조정 0~32%→0~16%,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적용) 기한 연장('20. 9월 말→'20. 12월 말), ③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유예폭 10%p→20%p, 기한 '21. 6월 말→'22. 6월 말)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참고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과기부1]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사업 선정·협약 완료

2020. 8. 26.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라 3차 추경으로 반영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사업 선정·협약을 완료함. 주요 내용으로 ① 비대면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기술 개발(20개·과제당 15억원/18개월), 비대면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바우처, 20개·과제당 3.5억원/12개월) 등 총 40개 과제 370억원 규모 추진, ②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9월말까지 전체 과제의 사업비 모두 지급 계획, ③ 기술개발 과제에 기업 13개, 연구기관 6개, 대학 1개 기관 선정, R&D 바우처

과제에 20개 중소·중견기업 선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사업 선정



[과기부2]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발표

2020. 8. 27.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8대 정책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공연구의 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임무 설정 및 공동연구단, 연구기관 간 횡단적 융합연구 활성화, ② 소부장·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보호무역주의 등 산업리스크에 대한 업계 공동대응체계 강화, ③ ITER, CERN 등 세계 정상급 연구그룹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이 준비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25호)]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 지정면적을 제한하고,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와 처벌 조항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80조제4항, 제180조의4,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이 그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현저히 다른 재화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재화 등의 판매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임을 통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친족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7인)]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이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신설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7인)]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하여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6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등)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 · 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